

의안 번호	제3574호
----------	--------

김포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5년 02월 28일 김포시장
- 나. 회 부 일 자 : 2025년 03월 11일
- 다. 상 정 일 자 : 2025년 03월 18일
- 라. 의 결 일 자 : 2025년 03월 18일

2. 제안이유

-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기준 및 지급 한도의 확대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시 자주재원의 확보 및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용어 정의 신설 (안 제2조)
- 나. 포상금 지급 대상 정비 (안 제3조)
 - 「지방세기본법」에 따른 지급 대상 정비
- 다. 포상금 지급 기준 신설(안 제4조)
 - 정리보류 된 체납액에 대한 지급 기준 추가
 - : 소멸시효 잔여일수별 100분의 6 ~ 100분의 10 차등 지급
- 라. 포상금 지급 한도 확대(안 제5조)
 - 징수 건당 및 체납 전담 임기제 공무원 월 지급액 한도 확대
 - : (현행) 건당 30만원, 월 300만원 ⇒ (개정) 건당 40만원, 월 400만원
- 마. 그 밖에 약칭 등 정비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5. 토론요지 : 생략
6. 수정안의 요지 : 안 제2조(정의) 제2호에서 “중요한 자료”를 ‘지방세 기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정보’로 정의하고 있으나 실제 상위법에서는 ‘정보’가 아닌 ‘자료 또는 정보’로 정의하고 있는 만큼 조문에서 이를 일치시키도록 수정함.
7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생략
9. 주문사항 : 없음
10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: 수정안 1부

김포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제3574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2025. 3. 12.
제출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안 제2조(정의) 제2호에서 “중요한 자료”를 ‘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제3항에 따른 정보’로 정의하고 있으나 실제 상위법에서는 ‘정보’가 아닌 ‘자료 또는 정보’로 정의하고 있는 만큼 조문에서 이를 일치시키도록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임.

2. 주요내용

- “중요한 자료”를 정의할 때 ‘정보’를 ‘자료 또는 정보’로 수정함(안 제2조제2호)

김포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김포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**따른**”을 “**따른 자료 또는**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“중요한 자료”란 「지방세 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46조제3항에 <u>따른</u> 정보를 말한다.</p> <p>3. ~ 5. (생 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----- <u>따른 자료 또는</u> -----.</p> <p>3. ~ 5. (현행과 같음)</p>